

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5~2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	2005. 5.
제 출 자	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-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, 그들에 대한 자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설치·운용하고 있으나,
- 기존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학기금 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(안 제2조).
-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 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 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며, 특별장학생은 일반장학생중 소년·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·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함(안 제8조).

■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설치) 군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
제3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 될 때까지 계속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2. 기탁금
3.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금

제4조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.

제5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·관리하되,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내의 금융기관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(회계공무원)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

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2. 기금출납원 : 사회보장담당주사

제7조 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장학생의 자격) ①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.

② 특별장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·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·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장학생중 이미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

제9조 (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)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.

제10조 (장학생 선발)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.

1. 읍·면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.
2.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·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.

제11조 (지급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
1.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미만일 때
2. 퇴학, 정학,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

3. 타 시·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을 때
 4.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
 5.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
- ② 군수는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.

제12조 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